

대구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4가합20136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석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종석

변론 종결2024. 9. 12.

판결 선고2024. 10. 10.

주 문

1. 피고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C이 주식회사 D의 파산관재인 E에 대하여 가지는 파산채권 263,826,750원에 관하여 2018. 2. 19.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61,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의 지인으로, 2018. 2. 19. C이 주식회사 D의 파산관재인 E에 대하여 가지는 파산채권 263,826,750원²⁾을 양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 및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61,500,000원을 배당받았다.

나. 한편 원고는 C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대구지방법원은 2024. 2. 13. C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2022고단2142, 2023고단3583(병합) 판결,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관련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관련 형사판결에 대하여는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2022고단2142]

'F((인터넷주소 1 생략), 이하 'F'이라 한다)'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자금모집원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F이 외환 파생상품 선물거래의 일종인 FX마진거래(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 국제외환시장에서 투자자가 '기준통화/상대통화'의 한 쌍으로 직접 거래하는 방식의 고위험 금융거래를 뜻한다) 전문 금융기관이라고 자칭하는 회사이다.

F은 '투자금을 납입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월 3~8%의 정액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위 인터넷 사이트에 개설된 개인구좌를 통해 투자금과 추천수당, 향후 지급될 배당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수취하고 있다. 그러나 F은 사무실 소재지, 운영현황, 자금모집원들에게 전달된 투자금의 해외 송금 여부와 그 실제 사용처, 투자자들에게 전달되는 배당금의 출처 등이 알려지지 않고, FX마진거래를 위해 필요한 FDM(Forex Dealer Membership, 국제 환 딜러)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대한민국에는 지사도 설립되어 있지 않다.

F 국내 최상위 투자자 G는 국내 F 투자자들의 자산증식과 재산보호, 안정적인 자산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며 F 본사와 공식 대화채널 역할을 담당하려는 모임인 H의 회장이고, C은 H의 이사직을 맡고 있었다.

C은 위 G 산하에 있는 자금모집원으로서, 대구 남구 I에 있는 사단법인 J 사무실과 대구 남구

K빌딩(3층) 사무실을 빌려 투자설명회 등을 위한 사무실로 운영하면서 L, M 등 상위 자금모집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F은 홍콩, 대만,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고 있는 FX마진거래 전문 증권회사로 FDM 인가를 받았고 태국 N그룹 계열사인 O의 자회사이기도 하다. F은 회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FX마진거래를 하여 고수익을 창출하는데 투자금을 주면 F 본사에 직접 입금을 해주고 배당금 역시 직접 인출하여 줄 수 있다', 'F에 투자하면 FX마진거래 수익을 배당받게 되는데 미화 1,000 달러를 투자하면 월 3%, 미화 5,000달러는 월 5%, 미화 10,000달러는 월 6%, 미화 20,000달러는 월 7%, 미화 30,000달러는 월 8%의 배당금을 18개월 동안 지급받게 되고 18개월 후에는 투자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투자금을 입금하면 회원으로 가입이 되고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구좌가 개설되는데 그 구좌에서 투자금 및 배당금의 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F의 운영현황과 투자금에 대한 원금 및 배당금 지급방법 등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FDM 자격이 없고 그 실체와 자금운용 방식 등이 불분명한 조직이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F본사에 직접 송금하는 것이 불법이어서 실제 수취한 투자금이 외국으로 송금되지도 않아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가상화폐인 CP(Cash Point)를 이용하여 계정을 개설하고 위 CP 교환을 통해 각종 배당금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C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F에 제대로 전달하거나 투자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G 및 L, M 등 상위 자금모집원 및 P, Q 등 중간 자금모집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투자자인 피해자 A(원고), 피해자 R으로부터 2014. 10. 31.경부터 2015. 6. 29.경까지 피해자 A로부터 161,893,875원, 피해자 R으로부터 92,300,000원을 F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254,193,875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3583]

피고인은 2015. 7.경 대구 남구 K빌딩 3층에서 피해자 R에게 'F의 지주회사인 S 주식의 투자가치가 매우 높다, 투자자들에게 현재 1주당 400원에 배정하고 있는데, 2016. 2.경 뉴욕 나스닥 증권시장에 상장된다, 일단 상장만 되면 1주당 4불로 10배 이상이 오를 수 있으니 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S 주식은 2015. 4. 15.경 F의 최상위 사업자인 G가 구속되고 L등 핵심 사업자들이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는 등 사실상 사업운영이 중단되어 더 이상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투자자들의 배당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F 투자금을 S 주식으로 강제 전환하며 투자자들이 불가피하게 보유하게 된 주식에 불과하였고 2016. 2.경에 상장될 가능성도 불투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4.경 피고인의 아들 T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경까지 사이에 총 17회에 걸쳐 합계 135,025,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관련 형사판결에 따르면, C이 원고를 포함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합계 389,218,875원(= 254,193,875원 + 135,025,000원)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C이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배당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반면, 피고는 C이 당시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피고가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의 본지에 따른 변제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고가 선의라는 취지로 다룬다.

나. 구체적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C이 원고로부터 2014. 10. 31.부터 2015. 6. 19.까지 161,893,875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 등의 범죄사실로 2024.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C에게 2014. 10. 31.부터 2015. 6. 19.까지 총 18회에 걸쳐 161,892,000원3) 을 송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여부 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 서구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무렵 대구 서구 V 대 173m²를 소유하고 있었고, 당시 시가는 2024년 개별공시지가인 133,504,100원과 유사할 것으로 추인되는 사실, 위 토지에는 3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데, 그 채권최고액이 합계 96,000,00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여기에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C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전에 저지른 불법행위로 원고를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합계 389,218,875원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까지 보태어 보면, C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거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으로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C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C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설령 피고가 C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C은 피고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적극재산인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는바, 위 법리에 의하면 이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점, ③ 한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C에 대하여 가진다고 주장하는 채권은 대여금 채권이 아니라 'F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C에게 지급한 투자금 반환채권 내지는 손해배상채권으로 보이는데, C에게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C은 지인관계에 있던 피고에게만 특별히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C에게 당시 이 사건 채권 외에 채무변제에 사용할만한 유의미한 적극재산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 중 1인에 불과한 피고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지 않고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인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C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3)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 여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 역시 'F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C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 중 1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런데 C이 원고를 포함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하여는 그 손해를 별달리 배상한 적이 없는 반면에, 오랜 친구 사이인 피고에게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여 준 점, ③ 그 결과 피고만이 주식회사 D에 관한 파산 및 배당절차에서 61,500,000원을 배당받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취소채권자로서는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금전이나 동산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참조).

앞서 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채권 중 61,500,000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하여 이 부분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피고가 수령한 금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앞에서 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피고의 배당금 액수보다 다액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피고가 수령한 배당금 61,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6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권준범

판사이경한

판사선승혜

- 1) 소장 청구취지 부분에는 '파산채권 263,826,750원에 대한 배당금 61,500,000원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C은 피고에게 파산채권 전체를 양도하였고, 피고가 배당절차에서 61,500,000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직권으로 정정하고, 청구취지 기재에는 채권양도계약 일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기록상 2018. 2. 19.자로 채권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직권으로 추가한다.
- 2) C은 당초 279,319,400원을 신고하였으나, 파산관재인 E가 그 중 15,492,650원에 대하여 이의하여 C의 파산채권은 263,826,750원으로 확정되었다.
- 3)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편취액과의 차액 1,875원은 수수료 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